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장애인 이동권과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윤준병 국회의원 『교통기본법』 제안서

2025.07.25.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소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동하고 싶고, 당신과 '함께' 세상을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 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2022년 2월 17일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 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시내·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에서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의 접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은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박탈된 가장 큰 무엇이었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와 원하는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 "당사국에게 현재의 대중교통 정책을 재고해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9조와 일반논평 2조(General Comment No.2)에 맞게,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이동권연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제안 등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동권을 둘러싼 대중의 편견 및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권리보장 캠페인 등의 사회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는 도시와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과 건축물에 대한 이동권 격차 역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동권연대를 전국 조직으로 설립,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대로 장애인 그 누구도, 지역 그 어디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기본법안 의견서

검토 방향 및 주요 내용

○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이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명시된 “이동권”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유기성이 법안 내용에서 부족한 지점들이 산재.

○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다양한 구조적·환경적 이유로 이동에서 차별과 제약을 경험. 교통기본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도 관련 법률과 연계해 언급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권리보장 조항 강화 필요.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설정,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등 교통약자를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법안의 위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제4조 ③ 국민 중 책무를 다해야 할 계층 나열
△ 제3조 8. “지속가능 교통체계” 정의에 따른 제8조(지속가능 교통),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포함
△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② ‘신체적’ 문항 삭제 및 ④ 시혜적 관점에 기반한 “이동편의”의 “이동권 보장” 문항 대체
△ 수요 응답형 차량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박탈(저상버스 → 휠체어 리프트 미부착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지역의 수요 실정 및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차별없이’ 문항 추가
△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제31조(기금의 용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과 함께 교통약자 지원 확대
△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위촉위원 내 교통약자 대표 단체 참여 보장

기 존 안	개 정 안
의안번호 2211040 교통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11040 교통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9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교통을 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장애, 성별, 나이, 출신 국가, 등

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속가능 교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교통수요의 감축, 기존 교통체계의 활용, 저탄소(低炭素)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 교통) ---------- -----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법 」 에 서 ---------- 새로운 대중교통 도입 등 ---------- 및 교통약자 ---------- ---------- --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의 수요와 공급 전망 3. 교통과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 ---------- ---------- ---------- ---------- ---------- ---------- ---------- ---------- ---------- ---------- ---------- ---------- ---------- ----------

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4. 국가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5. 국가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6.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수송체계 7. 광역 교통정책 방향 8.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방향 9.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10.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13. 국가교통사업의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우선순위	---------- ---------- ---------- ---------- ---------- ---------- ---------- ---------- ---------- ---------- ---------- ---------- ---------- ---------- ---------- ----------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① ---- ---------- ---------- ---------- ----------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 ~~신체적~~ 장애,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이동권 보장을 ----------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수요가 적은 농어촌, 외딴곳·오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수요 실정에 맞도록 예약형 버스 운행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 지역의 수요 실정 및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차별없이 ----------.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① ---------- -------교통약자 및------ ----------, ---------- - - - - - - - - - - - ---------- ---------- ----------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2. 교통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및 그 관리사업	----------
3. 보행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
4.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업	4. 교통약자 및 ---------- -----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③ ---------- ---------- ---------- ---------- ---------- ---------- ---------- ---------- ---------- ----------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 ---------- ----------